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법관 증원 등〉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650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대법관 증원 등	3
2. 심판권의 행사	10
3. 전국법관대표회의 근거 신설 등	20
4.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다양화	25
5.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	30
6. 변호사협회 법관 평가 결과 반영	37
참고자료 1. 대법원 구성의 변화	44
참고자료 2. 대법원 재판부 구성 변천	45
참고자료 3. 변호사협회 법관평가표	4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0. 20.
3. 회 부 일 : 2025. 10.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추적 기관임.

그러나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에 불과하여 연간 56,000건을 상회하는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여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렵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로 국민의 상고심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한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문제임.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후보자 다수가 특정 대학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집중되어 있어 구성의 획일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법관 인사제도는 폐쇄적 구조로 국민과 법조계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법관의 재판 태도와 전문성에 대한 변호사 및 국민의 체감은 사법 신뢰와 직결되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성별·지역·경력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제7조, 제9조의3, 제25조의2 및 제41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대법관 증원 등(안 제4조, 제41조)

- 안 제4조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41조는 대법관을 임명할 때에 대법원이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4조(대법관) ① (생략)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u>14명</u> 으로 한다.	제4조(대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26명</u> -----.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생략)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대법원이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대한민국헌법」 제102조제2항¹⁾에서는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조직법」 제4조제2항²⁾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1987년 10월 29일 개정헌법 시행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전부개정된 1987년 12월 4일 이래 대법관 중에서 보하였던 법원행정처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대법관의 수를 1명 감원하였던 일부 기간(2005년에서 2007년까지)을 제외하면, 대법관의 수는 계속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유지되었음.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대법원이 9명 이내의 대법관과 11명 이내의 대법원판사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1949년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이래 대법원은 9인 내지 15인의 대법관(대법원장 제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음.

- 최근 10년 대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의 지원이 있기는 하나, 대법원이 매년 약 3만~5만건 정도의 상고심 본안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대법관들의 재판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³⁾

50대 남성, 특정 대학 출신 전·현직 법관 위주의 대법관 구성을 다양

1)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3) 김용섭,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동북아법연구 vol.16, no.2, 2022, pp. 315-352

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사법부의 신뢰 제고 방안이나 사법 개혁의 과제의 하나로 계속 거론되는 사항 중 하나임⁴⁾.

<최근 10년 대법원 사건 접수·처리 현황>

연도	상고심 본안사건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
	접수건수	처리건수	
2015	41,850건	41,871건	3,489건
2016	43,694건	43,129건	3,594건
2017	46,412건	44,232건	3,686건
2018	47,979건	48,105건	4,009건
2019	44,328건	42,263건	3,522건
2020	46,231건	38,809건	3,234건
2021	40,489건	43,980건	3,665건
2022	52,480건	48,460건	4,038건
2023	37,669건	39,662건	3,305건
2024	44,817건	54,951건	4,579건

자료: 법원행정처

○ 안 제4조는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상고심 사건을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러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있음⁵⁾.

찬성하는 의견은 ① 대법원에 매년 약 4만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고 대법관 1인당 약 3천건 이상을 처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증원을 통하여 대법관의 재판업무부담을 경감하고, ② 신속한 판결로 국민의

4) “대법관 후보 3명 압축...모두 서울대 법대·50대 남성” KBS 뉴스, 2024. 11. 15,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또 그들만의 리그” 2014. 1. 25. 기사 등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75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참조, 제425회 국회(임시회)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 내용 참조

권리구제 또는 재판청구권 보장에 도움이 되며, ③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대법관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반대하는 의견은 ① 대법관 증원에 따른 행정 부담과 조직 복잡성을 키울 우려가 있고, ② 상고심 재판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켜 사건 수를 더 증가시키는 연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하급심의 충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⁶⁾, ③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현행법 체제⁷⁾ 내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반드시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임.

- 주요국의 최고법원 구성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미국은 9명, 영국은 12명, 일본은 15명으로 15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독일은 연방일반법원에 150여명, 프랑스는 파기원에 200여명(그 중 70여명은 재판연구관사임)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법관을 두고,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전문부를 상설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제21대국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7호,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p.12

7)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주요국 최고법원 구성원 수>

국가	최고법원 구성원 및 수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포함 9명의 대법관
영국 (대법원)	대법원장 포함 12명의 대법관
독일 (연방일반법원)	▶ 150여명 법원장, 19명의 재판장 및 그 외의 판사로 구성
프랑스 (파기원)	▶ 200여명 (그 중 70여명은 재판연구판사) 파기원장, 부장 파기원 판사 7명(그 중 6명은 재판장), 그 외의 파기원 판사
일본 (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장 포함 15명의 재판관

자료 : 법원행정처

○ 따라서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외국 입법례, 증원 규모에 따른 인적⁸⁾·물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⁹⁾.

○ 한편, 안 제41조는 대법관을 임명할 때에는 대법원이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정 성별과 경력 중심의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대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42조¹⁰⁾에 따르면,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20년 이상 판사·

8) 현재 대법원에는 법조경력 14년차 이상의 법관 재판연구관 101명과 비법관 재판연구관 31명 등 함께 132명에 이르는 재판연구관이 배치되어 있음.(2025. 10. 기준)

대법관(12명,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제외) 1인당 11명의 재판연구관(법관 8.4명, 비법관 2.6명)이 배치

9) 참고로,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025. 6. 4.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음.

10)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검사·변호사,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및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45세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80년 이후 현행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용된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대법관은 총 124명 중 120명으로, 그 비율은 약 96.8%이며, 2025년 10월 현재 임용 중인 14명의 대법관 모두가 판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 대법관 출신 직군 분포 >

(1980. 1. ~ 2025. 8. 기준)

근 거	직 군	수(명)	비 율(%)	비 고
1호	판사	102	82.2	
	검사	9	7.3	
	변호사	9	7.3	판사 경력 보유 8명
	소 계	120	96.8	
2호	공공기관 등	1	0.8	
3호	법학교수	3	2.4	판사 경력 보유 3명
계		124	100	

자료 : 법원행정처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③ (생략)

또한, 대법관의 성별 분포에 있어서도 남성 대법관이 91.9%로 절대적인 다수를 이루고 있었음.

< 대법관 출신 성별 분포 >

(1980. 1. ~ 2025. 8. 기준, 단위: 명)

	남성 (비율)	여성
인원	114 (91.9%)	10(8.1%)

자료 : 법원행정처

-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변화에 대한 통찰이 필수적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대법관 임명 시 성별, 지역, 경력 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가 대법원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법원이 폐쇄적 전문 관료 집단으로 인식되는 한계의 완화를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확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심판권의 행사(안 제7조)

- 안 제7조는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의 2분의 1로 구성되는 제1연합부와 제2연합부를 두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각 연합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하며,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판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심리 중인 연합부 대법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u>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u> 1. ~ 4. (생략) <u><신설></u>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u>대법원의 심판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u> 1. ~ 4. (현행과 같음) <u>②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법원</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② ~ ⑤ (생략)</u>	<u>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의 2분의 1로 구성되는 제1연합부와 제2연합부를 둔다.</u> <u>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각 연합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u> <u>④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판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심리 중인 연합부 대법관(대법원장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u> <u>⑤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u>

○ 현행법 제7조11)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11)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②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 ③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④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¹²⁾(제4호)를 제외하고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음.

- 「대한민국헌법」 제102조제1항¹³⁾에서는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 제7조제1항에서는 “대법원의 심판권을 전원합의체에서 행사하되,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는 형태의 법제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러한 심리 방식은 구 법원조직법(법률 제679호, 1961. 9. 1. 시행)부터 지금까지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④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1항에 따라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13)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이어지고 있음.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의 심판권을,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연합부의 심판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4항에서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판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심리 중인 연합부 대법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 따라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할 경우 단일 전원합의체로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여 사건을 심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연합부를 두어 기존 전원합의체와 유사한 규모의 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여 상고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안 제7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 연합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심판권 행사 방식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안 제7조제1항 각 호 사유인 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②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 ③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④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에는 대법원장과 각 연합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2개의 연합부가 구성되고 현행법상 전원합의체의 심판권 대상인 사건을 각 연합부에서 심판할 경우,

각 연합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대상 사건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각 연합부가 상이한 내용의 판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통일적인 법해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대법원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¹⁴⁾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상 전원합의체의 심판권 대상 사건을 각 연합부에서 심사하게 할 것인지, 또는 각 연합부의 심판권 대상 사건을 구분하여 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안을 각 연합부에서 먼저 심리하고,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판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심리 중인 연합부 대법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게 됨.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과는 달리 연합부의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현행법보다는 심리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전원합의체의 심판 사유를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판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전원합의체가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원합의체의 기능과 역할 축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14) 예를 들어, 제3호 사유인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각 연합부마다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연합부 판결을 변경하는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참고로 외국의 최고법원 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¹⁵⁾,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사건을 논의하는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영국 대법원은 상고 허가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대법관 12명 중 일부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하는데, 재판부의 구성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사건마다 별도로 재판부 및 그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며, 대부분은 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일부 사건은 7명 또는 9명, 혹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기도 함¹⁶⁾.

독일 연방일반법원의 경우 민사부 13개, 형사부 6개, 특별부 8개¹⁷⁾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재판부에는 재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지 9명의 판사가 소속되어 있음. 구체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은 재판장을 포함한 5명의 판사가 담당하며 통상 하나의 재판부 안에 3개의 합의체(소부)

15)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8)-각국의 상고제한제도와 상고심 심리방식-」, 2010.12., 사법정책연구원,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2022. 3. 참조

16) 재판부의 구성 내지 규모에 대하여 헌법개혁법 제42조제1항에서는 “① 홀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될 것, ② 적어도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될 것, ③ 절반 이상은 직업법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 재판부의 구성 내지 규모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에 재판부 규모 결정에 관한 원칙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재판부 대법관의 수를 5명보다 더 많이 구성하려고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 헌법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인 경우 ※ 중대한 공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 ※ 대법원 판례들 사이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 ※ 유럽인권조약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

17) 특별부 법관은 민사부·형사부 법관이 겸임함. 한편 독일(연방)의 경우 일반법원 외에 행정법원·재정법원·노동법원·사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가 있음.

또한, 각 재판부 사이의 법령 해석 통일을 위해 ‘민사 대재판부’, ‘형사 대재판부’를 두고 있으며, ‘민사 대재판부’는 연방일반법원장과 각 민사재판부 구성원 판사 1인씩, ‘형사 대재판부’의 경우 연방일반법원장과 각 형사재판부 구성원 판사 2명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의 계속적 발전 또는 판례의 통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일반법원장 및 양 대재판부의 모든 판사로 구성된 ‘통합 대재판부’를 구성하여 심리하고 있음¹⁸⁾.

프랑스 파기원은 총 6개의 재판부(민사부 3개, 상사부, 사회부, 형사부 각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재판부 내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최소 5인으로 구성된 통상합의부에서 심리함. 다만, ① 하나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의 관할에 걸치는 법률적 쟁점을 포함할 경우, ② 각 재판부가 해당 법적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재판부 내에서 판사들의 의견이 동수로 나뉘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1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연합부’에서 심판하고, 중대한 법률적 원칙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총 19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충원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할 수 있음.¹⁹⁾

18) 2021년 기준 10년 동안 ‘민사 대재판부’사건은 1건, ‘형사 대재판부’사건은 7건, ‘통합 대재판부’사건은 1건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운영된다고 함.

19) 연합부 구성: 파기원장 또는 파기원장 불참 시 부장 파기원 판사 중 최연장자, 관련 재판부의 부장 파기원 판사, 관련 재판부의 선임 파기원 판사, 관련 재판부에서 선출된 파기원 판사 2명씩
충원합의부 구성: 파기원장, 각 재판부의 부장 파기원 판사 6명, 각 재판부의 선임 파기원 판사 6명, 각 재판부에서 선출된 파기원 판사 6명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정과 5명씩으로 구성되는 3개의 소법정에서 심리하는데, 일본 재판소법은 대법정 및 소법정의 사무분담을 최고재판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²⁰⁾.

<주요국 최고법원의 재판부 구성>

국가	최고법원 구성원 및 수	재판부 구성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포함 9명의 대법관	전원합의체
영국 (대법원)	대법원장 포함 12명의 대법관	5명으로 부를 구성 - 재판, 또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7명, 9명 또는 11명의 대법관이 재판

20) 「재판소법」 제10조(대법정 및 소법정의 심판) 사건을 대법정 또는 소법정 중 어디에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법정에서 재판할 수 없다.

1. 당사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견이 종전에 대법정에서 그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다고 한 재판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헌법 그 밖의 법령의 해석적용에 대한 의견이 종전 최고재판소의 재판에 반하는 경우

「최고재판소 재판사무처리규칙」 제9조 ① 사건은 우선 소법정에서 심리한다.

② 다음 경우에는 소법정의 재판장은 대법정의 재판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소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소법정의 재판관의 의견이 2설로 나뉘고 그 설이 각각 동수인 경우
3. 대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대법정에서 다시 심리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정에서는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점에 관해서만 심리하고 재판하여도 무방하다.

④ 전항 후단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소법정에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심리와 재판을 한다.

⑤ 재판소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에 그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대법정 재판과 의견이 같을 때에는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관계없이 소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다.

⑥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해서, 의견이 대심원에서 내린 판결에 반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21) 민사부 3개, 상사부 1개, 형사부 1개, 사회부 1개로 구성. 한편 프랑스의 경우 행정사건은 국사원(Conseil d'Etat)의 관할임.

국가	최고법원 구성원 및 수	재판부 구성
독일 (연방일반법원)	▶ 150여명 법원장, 19명의 재판장 및 그 외의 판사로 구성	▶ 재판부(민사부 13개, 형사부 6개, 특별부 8개 설치)는 7~9명의 판사로 구성 ▶ 재판부 내 합의체(소부)에서 재판 ▶ 각 재판부 사이의 법령 해석 통일을 위해 민사 대재판부, 형사 대재판부 구성 ▶ 법의 발전 또는 판례의 통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 대재판부 구성
프랑스 (파기원)	▶ 200여명 (그 중 70여명은 재판연구판사) 파기원장, 부장 파기원 판사 7명(그 중 6명은 재판장), 그 외의 파기원 판사	▶ 재판부 (총 6개²¹⁾ 설치) 내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최소 5명으로 구성된 통상합의부 구성 ▶ 여러 재판부 관할에 걸치는 법률적 쟁점이 포함되는 경우 등에는 연합부(최소 13명의 법관) 구성 ▶ 중대한 법률적 원칙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등에는 총원합의부(19명의 법관) 구성
일본 (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장 포함 15명의 재판관	▶ 5명으로 구성된 소법정 구성 ▶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정 구성

자료 : 법원행정처

3.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신설 등(안 제9조의3)

- 안 제9조의3은 대법원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①</u> <u>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둔다.</u> <u>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수를 고려하여 법관대표를 각급 법원별로 할당하여 대표로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u>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u> <u>1. 사법행정 또는 법관독립에 관하여 의견 표명할 사항</u> <u>2. 대법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사법행정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 또는 대법원장에 건의할 사항</u> <u>3.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인</u>

현행	개정안
	<u>판사 5분의 1 이상의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u> 4. 그 밖에 법률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대법원규칙 제3084호)에 근거하여 법관대표 126명으로 구성되고,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함²²⁾.

22)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2조(구성)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6조(임무)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별표 1]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연번	기관	구성원	법원별 총원
1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제외), 특허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2
2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외)		3
3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3
4	서울고등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2명	4
5	수원지방법원		6
6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3명	9
7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제외),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 제외)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1
8	지원 중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판사회의가 설치된 지원		1
9	대법원	법관인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2명	2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²³⁾,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함²⁴⁾.

< 전국법관대표회의 실시 현황 >

연도	실시 횟수
2017년	4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4회
2022년	2회
2023년	2회
2024년	2회
2025년(현재)	4회

자료 : 법원행정처

10	사법연수원	법관 교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1
11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1

- 비고:
1. 각 지방법원은 관내에 판사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지원이 있는 경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지원 소속 판사들도 참여하는 관내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내부판사회의"라 함은 고등법원, 특허법원에서는 '고등부장판사회의'와 '고법판사·고법배석판사회의'를 말하고,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를 말한다.
 3. 단, 제2항에 따른 내부판사회의의 인원 구성에 불균형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 각 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원별로 부여된 대표자 총원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내부판사회의의 종류와 수 및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3)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 ① (생략)

-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4)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3조(의장 및 부의장) ①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②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이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성원 중 법조경력에 가장 많은 구성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안 제9조의3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근거 규정을 대법원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권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법률상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사법부 내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법행정 관련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9조의3제3항의 의결 사항 중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하여 의견 표명할 사항”(안 제1호)은 현행 대법원규칙 제6조 제1항²⁵⁾과 동일하고, “대법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사법행정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 및 대법원장에 건의할 사항”(안 제2호)는 안 제1호 사항인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대법원규칙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의 일종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전국법관회의를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하고, 법관대표를 각급 법원²⁶⁾별로 할당하여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르면 각급 법원 외에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의 대표자도 포함되어

25)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26) 대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가정법원 지원을 말함.

있으므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에 있어 판사회의가 없는 각급 법원
이나 각급 법원이 아닌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법관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다양화(안 제25조의2)

- 안 제25조의2는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인 법관 3명의 추천권자를 구체화하고(제1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중 1명을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로 하며(제3호),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자를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의 경험자로 규정함(제5호).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 ③ (생략)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 -----.
1. 법관 3명	1. 법관 3명(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하는 1인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1인)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3. ----- ----- 1명 및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생략)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u>각계 전문 분야</u> 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⑥ (생략)	5. ----- <u>인권과 사회적약자를 위한</u> ----- ----- -----. -----. ⑤·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5조의2²⁷⁾에 따르면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①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② 제41조제3항²⁸⁾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제2호), ③ 제45조의2²⁹⁾에 따른 판사의

- 27) 「법원조직법」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28)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연임에 관한 사항(제3호), ④ 제47조³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을 심의함.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법관 3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국제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됨.

- 안 제25조의2는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법관 3명(제1호)을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1명으로 세분화하여 추천권자를 분산시킴으로서 법관의 대표성과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던 변호사 2명(제3호)을 대한

29) 「법원조직법」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0) 「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과 지방변호사회³¹⁾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으로 추천권자를 분산시켜 변호사 인사의 다양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각계 전문 분야 경험자를(제5호) 인권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개정안에 따른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 >

현행법	개정안
법관 3명	법관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하는 1인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	현행과 같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및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현행과 같음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1명 이상은 여성)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1명 이상은 여성)

31) 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4개의 지방변호사회가 있음.

- 다만, 법관 3인 중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과 관련하여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는 회의체로서³²⁾ 「전국법원장회의 규칙」(대법원규칙 제2962호)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국법원장회의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입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2)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2조(기능)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한다.

5.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안 제41조의2)

- 안 제41조의2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제3호)으로 변경하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제7호) 변경하며,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신설하고(제8호),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자를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의 경험자로 규정함(제9호).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0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2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 -----.

현행	개정안
⑦ ~ ⑨ (생략)	등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41조의2³³⁾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

- 33)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비변호사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비변호사 전문가 중 1명은 여성이어야 함.

<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³⁴⁾ 위원 >

이 름	직 책
이○○(위원장)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김○○	선임대법관
천○○	법원행정처장
박○○	법무부장관
김○○	대한변호사협회장
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료 : 법원행정처

- 안 제41조의2조는 기존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폐쇄적이어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보완·개선을 통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보임.
- 먼저, 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②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변경하며, ③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변경하되

34)김상환 대법관 퇴임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1명은 여성으로 하고, ④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신설하며, ⑤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자를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의 경험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원행정처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변경(안 제3호)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법원행정처를 대표하고 지휘하는 기관장으로서 사법행정의 일환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에 있어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³⁵⁾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것은 권력분립 및 각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변경(안 제7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일선 판사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법부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실무적으로도

35)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을 위원으로 지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 또한,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추가 (안 제8호)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에 있어 인사의 다양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각계 전문 분야 경험자를(안 제9호) 인권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적 약자 및 권익 보호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선임대법관	현행과 같음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현행과 같음
	대한변호사협회장	현행과 같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현행과 같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행과 같음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이 경우 1명은 여성)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u>각계 전문분야에서</u>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	학식과 덕망이 있고 <u>인권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분야에서</u>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

- 한편, 안 제41조의2제4항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던 방식에서 호선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장의 선출 방식은 해당 위원회의 성격, 구성 및 독립성·대표성 보장 등 다양한 정책 목적과 조직 원리에 따라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추천을 위한 구성원간의 협의를 위하여 각 직역의 대표성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이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호선제로 변경함으로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변호사협회 법관 평가 결과 반영(안 제44조의2)

- 안 제44조의2는 판사에 대한 자질평정 기준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 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u>청렴성 및 친절성</u>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u>청렴성, 친절성 및 대한변호사 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 회의 법관평가</u>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44조의2³⁶⁾ 및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대법원규칙 제3189호)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평정은 근무성적평정과 자질평정으로

36) 「법원조직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나뉘는데,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률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자질 평정의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여³⁷⁾ 매년 1회 실시하고³⁸⁾, 판사에 대한 평정결과는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평정사항 및 평정 기준 >

평가사항	세부평가항목	평정기준	평가방법
근무성적	•법정에서의 소송 진행 •판결작성 •사건처리	•근무성적은 사건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률 등 기준에 따라 재량평가 •평가의 근거에 관하여는 세부 평가항목을 포괄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서술 기재	항목별 서술식 평가 +근거 기재
자질평정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직무자세 •전문성 및 발전가능성	•자질은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 기준에 따라 재량평가 •평가의 근거에 관하여는 세부 평가항목을 포괄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서술 기재	
특기사항	•건강·성격 및 품성	•자질 평정 항목에 포함되지만 평	항목별

37)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대법원규칙)

제5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률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자질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량으로 평가하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38)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대법원규칙)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 등 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법원조직정합성	가결과는 기재하기 어려운 항목임 •항목별 특이사항 기재	서술기재
	종합평정	•우수, 보통, 노력필요, 미흡	등급식 평가
	종합의견	•종합평정의 근거 및 특이사항	서술기재
	인사참고사항	•인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되 평정사항은 아닌 내용만 기재	서술기재

자료 : 법원행정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 자료집」, p.248

- 한편, 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최초로 도입한 후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함)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어,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회(경남회, 경기북부회, 부산회, 경기중앙회, 충북회, 울산회, 광주회, 전북회, 대전회, 대구회, 제주회, 인천회, 강원회, 총 14개)에서 실시하고 있음.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부터 14개 지방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있고, 2024년도부터 법관평가 사례를 종합한 법관평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대한변호사협회는 구체적인 법관평가의 방식(평가표 문항, 배점, 평가등급, 평가표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정하고 있고, 모든 지방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동일한 법관평가 방식을 취하여 4개의 항목, 10개의 평가문항, 5개의 평가등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법관평가표는 공정(30점), 품위·친절(20점), 신속·적정(20점), 직무능력·

직무성실(30점) 4개의 항목, 10개의 평가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음. 평가표에는 평가 대상인 법관에 대한 정보 및 평가자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건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각 지방회는 평가 연도(전년도 12. 1. ~ 당해 연도 11. 30.)별로 소속 변호사가 제출한 법관평가표를 취합한 후 각 법관별 점수 및 사례를 취합한 집계표를 작성하고, 우수법관·하위법관³⁹⁾을 선정하여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하고 있음.

- 안 제44조의2는 판사의 평정 중 자질평정 기준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법관 인사의 투명성 및 법관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한편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을 독려하고 부적합한 법관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판사의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있음⁴⁰⁾.

39)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① ‘우수법관’이라 함은 평가 기준연도에 회원들로부터 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상위 10% 이내 인원내 포함된 법관을 말한다.

② ‘하위법관’이라 함은 평가기준연도에 회원들로부터 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하위 10% 이내 인원내 포함되고 법관평가 점수가 평균점수에 현저히 미달한 법관을 말한다.
해당 지침을 통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의 기준을 권고하고 있음.

찬성하는 견해에 의하면, 법관의 주된 업무인 재판정에서의 업무 수행과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이므로, 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법관 인사 및 연임 심의에 반영할 경우 법관의 재판 업무 개선, 사법권 독립의 제고 및 공정한 인사를 위한 자료의 제공 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법관 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임.⁴¹⁾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외부 단체의 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반영할 경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는 회원인 변호사의 법관에 대한 평가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서 재판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변호사가 평가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회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이 낮고, 유효한 평가를 받은

40) 윤태석, 「법관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통권 427호, 대한변호사협회, 2012. 및 윤태석·이광수·정성희, 「법관평가의 법제화방안 연구」, 박영사, 2016. 박준선,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참조

41)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제9차 회의(2018. 10. 2.)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 바 있음.

1. 법관평가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져야 합니다.
2. 법관평가에 따른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평가 결과를 선발성 보직인사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법관의 연임심사에서 부적격자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여야 합니다.
3. 법관의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의 재판부구성원과 법원 외부의 재판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법관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4. 법관평가의 항목은 법관의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5. 부적격 평가를 받은 법관에게 그 결과가 고지되어야 하고, 해당 법관에게 이에 대한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법관⁴²⁾이 전체 법관의 일부에 불과하여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경우 평가를 받지 아니한 법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외국의 사례⁴³⁾를 보면, 일본의 경우 「재판관의 인사평가에 관한 규칙」⁴⁴⁾에 따라 매년 변호사가 관할법원의 재판관에 대하여 평가한 평가지가 평가권자인 소속 재판소장에게 제출되면, 재판소장이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결정함. 또한, 「하급재판소재판관지명자문위원회 규칙」⁴⁵⁾에 따라 최고재판소가 변호사회에 요청한 재임용 대상 재판관에 대하여 변호사의 평가지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위원회는 해당 자료와 법원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임용 대상자 적부 심의를 함.

미국의 경우 주별로 평가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상이한데, 미국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한 알래스카 주의 경우 3인의 변호사, 3인의 비변호사, 대법원장으로 구성된 사법협의회를 설치하여 법관의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법협의회는 변호사,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법원직원,

42) 개별 법관에 대하여 변호사 5인 이상의 평가표가 수집되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음.

43) 윤태석, 「법관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통권 427호, 대한변호사협회, 2012. 및 윤태석·이광수·정성희, 「법관평가의 법제화방안 연구」, 박영사, 2016. 박준선,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참조

44) 동 규칙 제3조에서 “인사 평가권을 가진 사람은 판사의 독립성을 고려하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 외부로부터의 정보에 관해서도 고려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5) 동 규칙 제11조에서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판소, 검찰청,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회 기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배심원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콜로라도 주 사법평가위원회는 4명의 변호사와 6명의 비변호사로 구성되며, 해당 법관의 법정에 출석한 사람들⁴⁶⁾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집단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독일의 경우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의 1차 평정자는 대체로 각 주의 법원장이고 최상위 평정자는 각 주의 주무장관으로, 조직 내의 근무 평정만이 존재함.

- 따라서 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법관 평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함께 이와 관련한 찬반 의견 및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71

46) 변호사, 검사, 배심원, 소송당사자, 경찰관, 법원직원, 법원 통역사, 보호관찰소 직원, 지역 사회복지과 직원, 범죄 피해자, 항소심 법원 법관 등.

참고자료 1 대법원 구성의 변화

법원조직법 제·개정 시기	대법원의 구성	대법원의 재판부	비고
1948. 5. 4. (과도 법원조직법)	대법관 11인 이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 전원연합부	고법 상고부 설치 (1심 단독사건)
1949. 9. 26. (제정 법원조직법)	대법관 9인 이내		고법 상고부 폐지
1959. 1. 13.	대법관 9인 이내 + 대법원판사 11인 이내	대법관 1인 이상 포함된 법관 5인으로 구성된 소부(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소부 +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연합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1961. 8. 12.	대법원장 포함 대법원판사 9인	전원합의부만 둬	고법 상고부 설치 (1심 단독사건) '대법관'을 '대법원판사'로 명칭 변경
1963. 12. 13.	대법원장 외 12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 + 전원합의부	고법 상고부 폐지
1969. 1. 20.	대법원장 외 15인		
1981. 1. 29.	대법원장 외 12인		상고허가제 실시 (1981. 3. 1.)
1987. 12. 4.	대법원장 외 대법관 13인		'대법관'으로 명칭 변경 상고허가제 폐지 (1990. 9. 1.) 심리불속행제 실시 (1994. 9. 1.)
2005. 12. 14.	대법원장 외 대법관 12인(*)		
2007. 12. 27. 이후	대법원장 외 대법관 13인(*)		

(*) 대법관 중에서 보하도록 하였던 법원행정처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대법관의 수를 1명 감원하였으나(2005. 12. 14.), 법원행정처장을 다시 대법관 중에서 보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대법관 수를 다시 1명 증원함(2007. 12. 27.).

자료: 대법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2021. 5. 21., p. 8 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참고자료 2 대법원 재판부 구성 변천

헌법		법원조직법	
1948. 7. 17. 제정 1952. 7. 7. 개정 1954. 11. 29. 개정 1960. 6. 15. 개정 1960. 11. 29. 개정	- 규정 없음	1949. 9. 26. 제정	- 대법관 9인 이내 - (원칙) 대법관 5인 소부 - (예외) 연합심판을 요할 때 전원연합부
		1959. 1. 13. 개정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 대법관 9인 이내 + 대법원판사 11인 이내 - (원칙) 대법관 1인 이상 포함된 소부 + 일부 사건은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소부 - (예외) 연합심판을 요할 때 대법관 전원 및 당해 계속사건에 관여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연합부
		1961. 8. 12. 개정 (고법 상고부 설치)	- 대법원장 포함 대법원판사 9인 - 전원합의체만 둠
1962. 12. 26. 개정 1969. 10. 21. 개정 1972. 12. 27. 개정	-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대법원의 법관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1963. 12. 13. 개정 (고법 상고부 폐지)	- 대법원장 외 대법원판사 12인 - (원칙) 전원합의체 - (예외) 3인 이상 소부
		1969. 1. 20. 개정	- 대법원장 외 대법원판사 15인 - (원칙) 전원합의체 - (예외) 3인 이상 소부
1980. 10. 27. 개정	-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1981. 1. 29. 개정 (1981. 3. 1. 상고허가제 시행)	- 대법원장 외 대법원판사 12인 (법원행정처장 불산입) - (원칙) 전원합의체 - (예외) 3인 이상 소부
1987. 10. 29. 개정	-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1987. 12. 4. 개정 (1990. 9. 1. 상고허가제 폐지) (1994. 9. 1. 심리불속행제 시행)	-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인 - (원칙) 전원합의체 - (예외) 3인 이상 소부
		2005. 12. 14. 개정	-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인 (비대법관 정무직 법원행정처장) - (원칙) 전원합의체 - (예외) 3인 이상 소부
		2007. 12. 27. 개정	-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인 - (원칙) 전원합의체 - (예외) 3인 이상 소부

참고자료 3

변호사협회 법관평가표

법관평가표

평가대상	법 원		평 가 일 [년 월 일] 사건번호 [] 평가변호사 등록번호 []
	재판부		
	판사명		

항목	문 항	평 가
공정 (30)	①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았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② 조정, 화해, 자백, 합의 등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③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증인신문시 불필요하게 시간 또는 문항을 제한하거나 질문을 제지하지 않았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품위· 친절 (20)	④ 반말이나 반말 투의 말, 고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⑤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었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신속· 적정 (20)	⑥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불필요한 기일 연기를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⑦ 개정시간이나 고지된 재판시각을 준수하고, 소송관계인이 부당하게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주지 않았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직무 능력· 직무 성실 (30)	⑧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재판의 진행이나 변론 종결에 있어 졸속진행이나 지연이 없었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⑨ 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였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⑩ 판결문(이유가 기재된 결정문 포함)이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 명하고 있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구체적 사 례		
기 타 의 견		
평 가 부	○ 각 문항 당 평가는 ‘매우우수(10점)·우수(8점)·보통(6점)·미흡(4점)·매우미흡(2점)’ 등 5개로 평가 ○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가급적 구체적 사유 기재요망. ○ 구체적 사례 및 기타 의견 작성 시 별지 기재 첨부 가능.	